#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422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9.

발 의 자:최혜영·강준현·기동민

김민석 · 남인순 · 문정복

신동근 · 오영환 · 위성곤

이은주 · 이장섭 · 인재근

정춘숙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의 업무범위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,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다른 법률에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위탁받은 업무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실제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의 운영, 자동차보험 심사, 응급의료비 대지급, 상급종합병원지정·평가 등 심사평가원의 전문인력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업무를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, 현행법상 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심사평가원이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수행 업무와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 하고, 업무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63조제1항제6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7호에"를 "제8호에"로 한다.

6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제103조제1항제1호 중 "제7호까지의"를 "제8호까지의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(업무 등) ① 심사평가원은	제63조(업무 등) ①
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6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
	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
<u>6.·7.</u> (생 략)	<u>7.·8.</u>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
	같음)
② 제1항제2호 및 <u>제7호에</u> 따	② <u>제8호에</u>
른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	
의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	
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	
여 고시한다.	
제103조(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)	제103조(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)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	①
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	
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	
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	
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	
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	
독을 할 수 있다.	
1.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	1
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	
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	

호부터 <u>제7호까지의</u> 규정에 ----<u>제8호까지의</u>-----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2. ~ 4. (생 략) ② (생 략)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